

서울특별시 조례 “건설기술자”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 (찬성자 48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773 호
- 다. 발의일자 : 2023. 5. 3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.

## 2. 제안이유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의 개정으로 “건설기술자”는 “건설기술인”으로 “건설업자”는 “건설사업자” 등으로 순화된 용어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“건설기술자”는 “건설기술인”으로 “건설업자”는 “건설사업자” 등으로 변경함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,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(2018.8.14.)과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(2019.4.30.)으로 “건설기술자”는 “건설기술인”으로, “건설업자”는 “건설사업자”로 개정됨에 따라,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을 반영하고자 공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[표] 상위법령 용어 조문 일괄정비 현황 ([붙임 1] 각 조례별 신규조문대비표)

조문	조례명	현행	개정(안)
제2조	「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	“건설업자”	“건설사업자”
		“건설기술자”	“건설기술인”
		“건설사업관리기술자”	“건설사업관리기술인”
제3조	「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	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”	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”
제4조	「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」	“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”	“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”
		“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”	“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”
제5조	「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	“지역중소건설업자”	“지역중소건설사업자”
		“건설업자”	“건설업을 하는 자”

- 우선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(2018.8.14.)을 통해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정비한 사유는,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,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의 개정(2019.4.30.)으로 “건설업자”를 “건설사업자”로 정비한 사유는, “업자”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순화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.
- 이에,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건설기술자”, “건설업자” 등이 포함된 조례 4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,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.
- 「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 제2조제3호는 “지역중소건설업자”에 대한 정의 중 “건설업자”를 “건설업을 하는 자”로 정비하고 있는데, 이 역시 “건설업자”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[붙임 1]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

## 〈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〉

###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품질관리계획"이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에 따른 <u>건설업자</u> 또는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(이하 "<u>건설업자</u> 등"이라 한다)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</p> <p>2. "품질시험계획"이란 <u>건설업자</u>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</p> <p>3. "품질시험 및 검사 (이하 "품질검사"라 한다)"란 <u>건설업자</u>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.</p> <p>4. "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"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<u>건설업자</u> 등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건설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 <u>건설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<u>건설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 ----- <u>건설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----- ----- <u>건설사업자</u> -----</p>

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주를 하였거나 인·허가 한 서울특별시 (이하 "시"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·출연기관 (이하 "투자기관 등"이라 한다)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5. "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"이란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(이하 "발주자"라 한다)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) 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(이하 "시험소장"이라 한다)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건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5. -----  
건설사업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3조(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) ① --  
----- 건설사업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건설사업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④ 건설사업자 -----

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(이하 "공사감독자"라 한다) 또는 영 제55조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(이하 "건설사업관리기술자"라 한다)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,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)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로 시험소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(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기 등) ① ~ ⑤ (생략)  
⑥ 시험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국토교통부 고시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82조 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장대리인 (이하 "현장대리인"이라 한다)이 참관하여야 한다.

⑦ (생략)

제11조(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) ① ~ ⑦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건설기술인(이하 "건설사업관리기술인"이라 한다)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-----

제8조(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) -----  
-----  
-----  
건설사업자-----  
-----  
-----

제10조(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기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 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시험소장이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이 참관하여야 한다.

⑨ (생략)

제16조(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)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⑧ -----

-----

-----

-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대리인이 참관하여야 한다.

⑨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) 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건설사업자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건설사업자 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

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) ① (생략) ② 건설공사의 <u>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자</u> 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 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10조(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건설공사의 <u>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**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 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</p> <p>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(건축기계설비,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)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<u>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제8조(위험도 평가관리반의 구성·운영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위험도 평가관리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(건축기계설비,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)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<u>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5조(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험도 평가관리반의 구성·운영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**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<u>지역중소건설업자</u>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<u>건설업자</u>를 말한다.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제4조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지역건설산업자 및 <u>지역중소건설업자</u>의 수주율·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5조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)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<u>지역중소건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지역중소건설사업자</u>”----- ----- -----</p> <p><u>건설업을 하는 자</u> -----.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지역중소건설사업자</u>----- -----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역중소건</u></p>

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 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6조(건설공사의 분할계약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·시행하여야 한다.

설사업자

②

지역중소건설사업자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건설공사의 분할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지역중소건설사업자